

## 학술상 시행 세칙

2014년 11월 06일 제정

2016년 04월 06일 개정

2023년 06월 19일 개정

제 1조 (명칭) 본 상은 ‘한국전기화학상’ 이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한국전기화학상은 국내 전기화학 및 유관 학문의 발전에 공헌도가 높고, 한국전기화학회 학회지 (JKES 및 JECST) 및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탁월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전기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견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하며, 본 규정은 본 한국전기화학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감사) 본 한국전기화학상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

제 4조 (위원회) 본 한국전기화학상의 운영 및 포상 업무의 추진은 수상위원회가 담당한다.

제 5조 (수상 후보자) 수상 후보자는 응모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전기화학회 정회원 또는 중신회원으로서, 국내·외 전기화학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, 탁월한 생애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.

제 6조 (수상 후보자 추천) 학회 분과회, 지부, 기타 학회 산하 조직의 장 또는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) 추천서, 2) 생애 총괄 연구 업적 목록과 주요 경력, 한국전기화학회 활동 내역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토록 한다.

제 7조 (수상자 선정) 수상 위원회에서 접수 받은 추천서와 연구업적, 대표논문의 수월성, 학회 공헌도를 종합 심사하여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.

제 8조 (시상) 본 한국전기화학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10 백만 원으로 한다.

제 9조 (시상 시기 및 수상자 수) 수상자는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년 1 회 시상하며 수상자는 1 명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10조 (의무) 수상자는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수행한다.

부칙.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0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